**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초안)**

**제1장 총칙**

제1조 안전생산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방지․감소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장(이하 “생산경영 사업장”라 한다)의 안전생산은 이 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가 소방안전과 도로교통 안전, 철도교통 안전, 수상교통 안전, 민용항공 안전 및 핵과 복사 안전, 특수설비 안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안전생산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업무는 사람을 근본으로 **인민 지상(至上), 생명 지상(至上)을 견지하며 인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안전 발전 **이념을 수립하고,** 안전제일, 예방위주, 종합관리 방침을 견지하며, **중대한 안전 위험을 원천적으로 예방 및 해소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업무는 업종 관리시 반드시 안전관리, 업무 관리시 반드시 안전 관리, 생산경영 관리시에도 반드시 안전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체적 책임**과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 및 실현하며, 생산경영 사업장의 책임, 근로자의 참여, 정부의 관리감독, 업계 자율과 사회의 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4조 생산경영 사업장은 이 법과 기타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며, **전원(全員)** 안전생산 책임제도와 안전생산 규장제도를 구축․보완하고, **안전생산 자금, 물자, 인원에 대한 투입 보장강도를 높이며,** 안전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 기준화 건설을 **강화하며**, **안전위험 등급별 관리통제와 잠재적 위험 조사처리 이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예방 및 해소체제를 완비하고** 안전생산 수준을 제고하여 안전생산을 확보한다.

제5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생산 제1 책임자이자** 당해 사업장의 안전생산 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진다. **기타 책임자는 직책 범위 내 안전생산 업무에 대해 책임진다.**

제6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종사자는 법에 의하여 안전생산 보장을 확보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법에 따라 안전생산 방면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조직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의 민주적 관리와 감독에 참가하며, 안전생산 방면에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안전생산관련 규장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따라 안전생산 계획을 제정, 조직,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계획은 **국토 공간 등 관련**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안전생산 업무 조정 시스템을 만들며, 각 관련 부문이 법에 의해 안선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독려하여야 하며, 안전생산 관리감독상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시에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기반시설 건설과 안전생산 능력 건설을 강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예산에 포함한다.**

 향, 진 인민정부**와** 가도(街道) 판사처 **및 개발구, 항구, 관광구 등은 안전생산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유관 사업기구 및 그 직책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안전생산 관리감독 역량 건설을 강화하여,** 직책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 **또는 관리구역** 내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에 협조**하거나 수권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안전위험평가와 논증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안전위험 관리통제 요구에 따라 산업규획과 공간배치를 진행하며 또한 위치가 인접하고, 업종이 비슷하며, 업태가 유사한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해 중대 안전위험 공동 예방 통제를 실시한다.**

제9조 국무원 **응급** 관리부서는 이 법에 따라 전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응급** 관리부서는 이 법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내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 **교통운수, 주택성향(城鄕) 건설, 수력, 민항 등**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내 관련 업계, 영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내 관련 업계, 영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응급** 관리부서와 관련 업계, 영역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부서는 통일적으로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라 한다.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맡은 부서는 상호간 협력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법에 따라 안전생산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안전생산 보장의 필요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을 적시에 제정하고, 동시에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발전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수정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안전생산 강제성 국가기준의 항목 제의, 초안 마련, 의견 수렴, 기술 심사를 책임진다. 국무원 응급 관리부서는 안전생산 강제성 국가기준의 항목 입안 계획을 총괄하여 제의한다. 국무원 기준화 행정 주관부서는 안전생산 강제성 국가기준의 항목 입안, 일련번호, 대외통보와 수권비준 발표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기준화 행정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는 법정 직책에 의거하여 안전생산 강제성 국가기준 실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법에 의하여 제정된 안전생산 보장에 대한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와 안전생산 지식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전 사회적인 안전생산 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련 협회는 법률, 행정법규와 장정에 따라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해 안전생산 방면의 정보와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 작용을 발휘하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 강화를 촉진한다.

제13조 법에 의해 설립된 안전생산을 위하여 기술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와 작업집행준책에 따라 생산경영 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그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에 기술서비스와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이 앞의 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동 기관이 안전생산 기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안전생산에 대한 보증 책임은 여전히 해당 사업장이 부담한다.

제14조 국가는 안전생산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제도를 실시하고, 이 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 사고 **책임 사업자**와 책임자에 대한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15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맡은 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안전생산 권한과 책임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안전생산 과학기술 연구와 안전생산 선진기술의 응용보급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안전생산수준을 제고한다.

**제17조** 국가는 안전생산 여건의 개선, 안전생산 사고의 방지, 응급구호 참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한다.

**제2장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보장**

**제18조** 생산경영 사업장은 이 법과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9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사업장의 **전원(全員)** 안전생산책임제를 **구축 및 완비해 이를 이행하며, 안전생산 기준화 건설을 강화한다.**

 2.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조작규정을 조직하여 제정한다.

 3. 사업장의 안전생산 교육훈련 계획을 조직하여 제정하고 실시한다.

 4. 사업장의 안전생산 투입에 대한 효력있는 실시를 보증한다.

 5. **안전위험 등급별 관리통제와 잠재적 위험 조사처리 이중 예방 업무 시스템을 구축 및 이행하며** 사업장의 안전생산 업무를 촉구, 검사하고, 생산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生産安全事故隱患)를 적시에 제거한다.

 6. 사업장의 생산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응급구조 예비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7. 생산안전 사고를 적시에 사실대로 보고한다.

**제20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전원(全員)** 안전생산책임제는 각 직위의 책임인원, 책임범위와 심사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상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원(全員)** 안전생산책임제의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심사를 강화하고, **전원(全員)** 안전생산책임제의 실시를 보증해야 한다.

**제21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구비하여야 하는 안전생산조건에 소요되는 자금투입은 생산경영 사업장의 결정기구, 주요책임자 또는 개인경영 투자자가 보증하고, 동시에 안전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의 투입부족이 초래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관련 생산경영 사업장은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안전생산조건의 개선에만 사용해야 한다. 안전생산 비용은 자본금(成本)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지출해야 한다. 안전생산 비용의 인출, 사용과 관리감독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에서 국무원 **응급** 관리부서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제정한다.

**제22조** 광산, 금속제련, 건축시공, **운수** 사업장과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하역**하는 사업장은 안전생산 관리기구 또는 전문 안전생산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앞의 항 규정이외의 기타 생산경영 사업장은 종사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기구 또는 전임 안전생산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종사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임 또는 겸임의 안전생산 관리자를 두어야한다.

**제23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 조작규정과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안의 입안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2. 사업장의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안전생산 교육훈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3. **위험원(源) 식별과 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며** 사업장의 중대한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실시를 촉구한다.

 4. 사업장의 응급구조 연습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5. 사업장의 안전생산 상황을 검사하고, 생산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제거하며, 안전생산 관리 개선을 위해 건의를 한다.

 6. 규정에 위반된 지휘, 위험한 작업 강제명령, 조작규정 위반행위를 제지하고 바로잡는다.

 7. 사업장의 안전생산 정리개혁 조치 실시를 촉구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안전생산 분장 전임 책임자를 뽑아 당해 사업장 책임자와 협조하여 안전생산관리 직책을 이행할 수 있다.**

**제24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자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안전생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안전생산 관리자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한 것을 이유로 임금, 복리 등 대우를 낮추거나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하는 사업장 및 광산, 금속제련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자의 임면은 안전생산 관리감독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25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생산경영활동과 상응하는 안전생산 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하역**하는 사업장 및 광산, 건축시공, **운수** 사업장의 주요책임자 및 안전생산 관리자는 관련 주관부서의 안전생산 지식과 관리능력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후에야 직무에 임명될 수 있다. 심사는 무료이다.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 **하역**하는 사업장 및 광산, 금속제련 사업장은 등록된 안전공정사를 안전생산 관리업무에 종사토록 하여야 한다. 기타 생산경영 사업장에서는 등록된 안전공정사를 채용하여 안전생산 관리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것을 장려한다. 등록된 안전공정사는 전문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국무원 **응급** 관리부서가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26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종사자가 필요한 안전생산 지식을 갖추도록 보증한다. 관련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안전조작 규정을 상세히 알도록 하고, 해당 직위의 안전조작 기능에 정통하도록 하며, 사고시 응급처리 조치를 이해하고, 안전생산 방면에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한다.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는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직위의 안전조작 규정과 안전조작 기능에 대한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노무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이 중등직업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실습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실습학생에게 상응한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노동방호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는 생산경영 사업장과 협조하여 실습학생에 대한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안전생산 교육훈련 서류를 만들어 안전생산 교육훈련의 시간, 내용, 참가인원 및 심사결과 등의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신공법, 신기술, 신재료를 채택하거나 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기술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효과적인 안전방호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8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특수작업 종사자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안전작업훈련을 받고, 상응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특수작업 종사자의 범위는 국무원의 **응급** 관리부서가 국무원의 관련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제29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공정항목(工程项目, 이하 “건설항목”이라 한다)의 안전시설을 신축, 개축, 증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요 공정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하여야 한다. 안전시설투자는 건설항목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 하역하는 건설항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안전평가기구가 안전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1**조 건설항목 안전시설의 설계사, 설계기관(업체)는 안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 하역하는 건설항목의 안전시설 설계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련부서의 심사를 거치고, 심사부문 및 그 심사책임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2**조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의 생산, 저장, 하역하는 건설항 목의 시공 사업자는 반드시 비준된 안전시설설계에 의하여 시공하고, 동시에 안전시설의 공정품질에 대하여 책임진다.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사용, 저장, **하역**하는 건설항목은 준공하여 가동 혹은 사용 전에 반드시 건설 사업장 책임조직이 안전시설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에 합격한 후에 생산에 투입하고 사용할 수 있다.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맡은** 부서는 건설 사업장 검수활동과 검수결과에 대하여 감독 및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3**조 생산경영 사업장은 위험요소가 큰 생산경영 장소와 관련시설, 설비에 분명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 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측정검사, 유지보수, 개조와 폐기는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와 정비와 함께 정기검사를 하여 정상 가동을 보증하여야 한다. 보호, 정비 및 측정검사는 기록을 남기고, 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위험물품의 용기, 운송기기 및 신체안전에 관계되고 위험성이 큰 해양석유 채굴 특수 설비와 광산 갱내 특수설비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전문 생산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동시에 전문적인 측정검사를 통하여 검증기관이 측정검사하고, 검증에 합격하여 안전사용증서 또는 안전표시를 취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측정검사, 검증기관은 측정검사, 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6**조 국가는 생산안전에 엄중한 위험을 야기하는 공법, 설비에 대한 퇴출제도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응급** 관리부서가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공표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목록의 제정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목록을 제정하여 공표하고, 앞의 항 규정 이외의 생산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공법, 설비에 대해 퇴출시킬 수 있다.

 생산경영 사업자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는 생산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공법,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7**조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수, 저장, 사용하거나 폐기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주관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따라 심사․허가하고, 동시에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생산경영 사업주가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수, 저장, 사용하거나 폐기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며, 믿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감독을 받는다.

제**38**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중대한 위험(危险源)에 대하여 서류를 만들어 등기하고, 정기 측정검사, 평가, 감독 제어를 실시하며, 동시에 응급예비안을 마련하여 종사자와 관련자에게 긴급한 상황에서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를 알려준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중대한 위험 및 관련 안전조치, 응급조치를 지방인민정부의 **응급** 관리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 지방 인민정부의 응급 관리부서와 관련 부서는 연계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39**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안전위험 등급별 관리통제 제도를 구축하여 안전 위험 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생산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조사, 처리(排査治理)제도를 만들고, 기술, 관리조치를 채택하여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의 잠재적 문제 조사, 처리 상황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하며, 또한 **노동자 대표총회 또는 노동자 총회, 정보 공시란 등의 방식을 통해**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중,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위험 조사, 처리 상황을 적시에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맡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반드시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관련 정보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 처리 감독제도를 만들어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제거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제**40**조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는 근로자 기숙사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동시에 근로자 기숙사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장소와 근로자 기숙사는 긴급 대피가 가능하고, 분명한 표시가 있으며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는 출구, **대피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장소 또는 근로자 기숙사 출구, **대피통로**를 **점용하고**, 잠그고, 막는(鎖閉, 封堵) 행위를 금지한다.

제**41**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폭파, 중장비를 이용한 조립 및 국무원 **응급** 관리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위험작업은 반드시 전문가를 배치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조작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생산경영 사업자는 종사자가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안전조작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교육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동시에 종사자에게 작업장소와 직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방범조치 및 사고응급조치를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의 생리적, 심리적 상태와 행동 습관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적 위로를 강화하며 직무 안전생산 책임을 엄격히 실행하여 종사자의 이상(異常)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부합되는 노동방호용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동시에 종사자가 사용규칙에 의하여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4**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자는 사업장의 생산경영 특성에 근거하여 안전생산 상황에 대하여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중에 발견되는 안전문제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장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책임자는 반드시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검사 및 처리상황은 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안전생산 관리자는 검사 중에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앞의 항 조항에 따라 사업장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책임자가 적시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자는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부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노동보호용품 구비와 안전생산 훈련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46**조 2개 이상의 생산경영 사업이 동일한 작업 구역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생산안전에 위험이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여 각자의 안전생산 관리직책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전임 안전생산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검사와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생산경영 항목, 장소, 설비를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진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할 수 없다.

 생산경영 항목, 장소를 다른 사업주에게 하청이나 임대를 준 생산경영 사업주는 반드시 도급 및 임차사업자와 전문적인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거나 도급계약, 임대계약 중 각자의 안전생산 관리직책을 약정한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도급 및 임차사업자의 안전생산 작업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조정, 관리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하며, 안전문제가 발견되면 적시에 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48**조 생산경영 사업장에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조직적인 구조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조사처리기간에 임의로 직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49**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종사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는 생산경영 사업주가 안전생산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한다. **국가가 규정한 고위험 업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생산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범위와 실시방법은 국무원 응급 관리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 국무원 보험관리감독기구 및 관련 업종 주관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3장 종사자의 안전생산 권리와 의무**

제**50**조 생산경영 사업주와 종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종사자의 노동안전을 보장하고 직업위해를 방지하는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고, 아울러 법에 따라 종사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와 어떠한 형식으로 협의를 체결하더라도 종사자의 생산안전사고 사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종사자는 그 작업장소와 직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방범조치 및 사고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52**조 종사자는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 중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비평,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와 위험작업을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 사업자는 종사자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생산 작업에 비평, 고발, 고소를 제기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 위험작업의 강제적인 명령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임금, 복리 등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53**조 종사자가 신체안전에 직접 위험을 미치는 긴급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작업을 정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소를 이탈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 사업주는 종사자가 앞의 항의 긴급상황 하에서 작업을 정지하거나 긴급 이탈조치를 취한 것을 이유로 임금, 복리 등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54**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생산 안전사고 발생 후, 적시에 조치를 취하여 관련 인원을 구조하여야 한다.**

 생산안전사고로 손해를 입은 종사자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 대우를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률에 따라 **배상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 요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55**조 종사자는 작업과정에서 **직무 안전책임을 엄격히 실행**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조작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보호용품을 정확히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56조 종사자는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받고, 직무에 필요한 안전생산 지식을 잘 파악하며, 안전생산 기능을 제고하여 사고예방과 응급처리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7**조 종사자는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 또는 기타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현장의 안전생산 관리자 또는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담당자는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8**조 노동조합은 건설항목에서 주요공정과 안전시설의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생산과 사용에 대하여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은 생산경영 사업주가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종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 사업주의 규정에 위반된 지휘 및 위험작업에 대한 강제적 명령 ,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결책을 건의할 권리가 있고, 생산경영 사업주는 적시에 연구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종사자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주에게 종사자들을 위험장소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고, 생산경영 사업주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사고조사에 참가하고,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을 제기하며,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9**조 생산경영 사업주가 파견된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에 파견노동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권리를 획득하고, 아울러 반드시 이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생산 관리감독**

제**60**조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내의 안전생산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직책에 따라 행정구역 내 중대 생산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응급** 관리부서는 등급별 관리감독 요구에 따라 연간 안전생산 감독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감독검사 계획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발견하면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1**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과 관계되는 사항이 심사 비준(비준, 심사 비준, 허가, 등록, 인증, 증명서 교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심사한다.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비준을 하거나 검수를 통과시킬 수 없다. 법에 의하여 비준 또는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사업자가 임의로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우에는 행정심사비준을 책임진 부서가 발견하거나 고발을 받은 후에 즉시 단속을 하고, 동시에 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미 법에 따라 비준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심사비준을 책임진 부서가 안전생산조건을 재차 구비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래의 비준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2**조 안전생산 관리감독관리 책임부서는 안전생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검수의 실시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심사와 검수를 받는 사업자에게 특정 브랜드 또는 특정 생산, 판매 사업자의 안전설비, 기자재 또는 기타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63**조 **응급** 관리감독 부서와 기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 행정집행 업무를 실시하고, 생산경영 사업장이 안전생산의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을 집행하는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생산경영 사업장에 진입,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며, 관련 기관과 인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다.

 2. 검사 중에 발견한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시정 또는 기한내 시정을 명령한다.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부과하여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벌의 결정을 한다.

 3. 검사 중에 발견한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제거하기 전 또는 제거 과정 중에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구역에서 작업자를 철수하도록 명령하고, 잠시 휴업하거나 사용정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제거한 후 심사동의를 거쳐야 생산경영과 사용을 회복할 수 있다.

 4.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 시설, 설비, 기자재 및 위법하게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송되는 위험물품에 대해서는 차압하거나 압수하고, 위법하게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 사용, 경영하는 작업장소는 차압하고 법에 따라 처리를 결정한다.

 감독․검사는 피검사 사업장의 정상적 생산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4**조 생산경영 사업주는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의 감독검사자(이하 “안전생산 감독검사자”라 한다)가 법에 따라 감독검사 직책을 이행하는 경우에 협력하여야 하고, 거절이나 방해할 수 없다.

제**65**조 안전생산감독 검사자는 직무수행에 충실하고, 원칙을 견지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검사자는 감독검사 임무 집행시 유효한 **행정** 법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검사 사업장과 관계되는 기술적 비밀과 업무상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제**66**조 안전생산 감독검사자는 검사 시간, 장소, 내용, 발견한 문제 및 그 처리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검사자와 피검사 사업장의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피검사 사업장의 책임자가 서명을 거절할 경우에는 검사자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 부서는 감독검사 중 상호 협력하여 연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확실히 필요하여 따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상호 통보하고, 발견한 안전문제를 기타 관련 부서가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시에 기타 관련 부서에 이송하고, 동시에 검사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부서는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8**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가 있는 사업경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련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서 생산정지, 휴업, 시공정지, 사용정지 결정을 내리고, 생산경영 사업장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집행하고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제거해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이 집행을 거절하고 생산안전 사고의 현실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 보증의 전제하에 해당 부서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전기공급 정지, 민용폭발물품 공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해 이행결정을 강제한다. 통지는 반드시 서면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은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앞의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급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생산안전을 위협하는 긴급상황 외에는 반드시 생산경영 사업장에 24시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이행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를 제거하는 경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적시에 앞의 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9**조 감찰기관은 **감찰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 관라감독 책임부서 및 그 직원의 안전생산 감찰직책의 이행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한다.

제**70**조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을 책임지는 기관은 국가에서 규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동시에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을 책임지는 기관은 서비스 공개 제도를 구축 및 실시하여야 하고, 자질을 빌려주거나, 예속하거나, 허위 보고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71**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신고제도를 구축하고, 신고전화, 우편함 또는 이메일주소를 공개하여 안전생산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다. 접수한 신고사항은 조사, 확인 후 서면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비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에 보고하여 서명을 받고, 동시에 실시를 독촉한다. **본 부서 직책에 속하지 않아 기타 관련 부서가 조사를 진행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한다. 인원 사망과 관련된 신고 사항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검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2**조 모든 사업장 또는 개인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된 문제 또는 안전생산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에 보고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73**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소재지역내의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의 잠재된 문제 또는 안전생산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보고하거나 안전생산위법행위를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공을 세운 자를 장려한다. 구체적인 장려방법은 국무원의 **응급**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가 국무원의 재정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75**조 뉴스, 출판, 방송, 영화, TV 등의 매체는 안전생산 공익선전, 교육할 의무가 있고, 안전생산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여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76**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반드시 안전생산 위법행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생산경영 사업장 **및 관련 종사자** 안전생산 위법행위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위법행위 내용이 엄중한 생산경영 사업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시에** 사회에 공표하며, 업종주관부서, 투자주관부서, **자연**자원주관부서, 증권관리감독기관 및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와 기구는 신용상실 행위가 존재하는 생산경영 사업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법집행 횟수 확대, 항목(프로젝트) 심사비준 일시 정지, 관련 보험비율 인상, 업종 또는 직업 금지명령 등 연합 징계 조치를 취하고,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은 행정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내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여야 하고,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맡은 부서는 생산경영 사업장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연합 징계를 내려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맡은 부서는 생산경영 사업장 행정처벌 정보에 대해 적시에 수집, 공유, 응용과 공개 노출 강도를 강화하며,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한 처벌 진행 후 3 영업일 내에 관리감독부서 공시 시스템에 공개하고, 위법 및 신용상실 생산경영 사업장 및 그 관련 종사자에 대한 대중의 감독을 강화하며, 전(全) 사회적 안전생산의 신뢰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5장 안전생산사고의 응급구조와 조사처리**

제**77**조 국가는 생산안전사고 응급능력 건설과 중점 업종, 영역에서의 응급구조 기지와 응급구조 대오 건립을 강화하고, 생산경영 사업장과 기타 사회역량의 응급구조 대오 건립을 격려하며, 상응한 구조 설비와 물자를 배치하고, 응급구조의 전문화 수준을 제고한다.

 국무원 **응급** 안전생산 관리감독 부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무원 **교통운수, 주택성향(城鄕) 건설, 수력, 민항 등**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업종, 영역, **지역**에서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정보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다. **상호 접속, 정보 공유를 실현하고 인터넷상의 안전 정보 수집, 안전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예보를 추진하며 관리감독의 정밀화, 지능화 수준을 눂인다.**

제**78**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행정구역내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안을 마련하고,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향, 진 인민정부와 가도(街道) 판사처 등은 상응하는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안을 제정하고,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법에 의거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업무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9**조 생산경영 사업장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안을 제정하여,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조직, 제정한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안과 연계시키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80**조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 사업체 및 광산, 금속제련, 도시철도교통운영, 건축시공 사업장은 응급구조 조직을 구축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규모가 작아 응급구조 조직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겸직의 응급구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 운송 사업장 및 광산, 금속제련, 도시철도교통운영, 건축시공 사업장은 필요한 응급구조 기자재와 설비, 물자를 마련하고, 일상적인 보호, 정비를 실시하여 정상 가동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81**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고현장의 관련자는 즉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장 책임자는 사고보고를 받은 후에 신속히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를 조직하여 사고확대를 방지하고 사상자와 재산손실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그 지역의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에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하며,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연 보고해서는 안된다. 또한, 고의로 사고현장을 파괴하거나 관련증거를 없애서는 안된다.

제**82**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국가 관련규정에 의하여 즉시 사고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와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사고상황에 대하여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연 보고해서는 안된다.

제**83**조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의 책임자는 생산안전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안전생산사고 응급구조 예비안에 따라 즉시 사고현장에 가서 사고구조를 조직하여야 한다.

 사고구조에 참여한 부서와 기관은 반드시 통일된 지휘에 복종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유효한 응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구조의 필요에 따라 경계, 분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확대와 2차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며, 사상자와 재산손실을 줄여야 한다.

 사고구조 과정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모든 단체와 개인은 모두 사고구조에 지원과 협력을 하고, 모든 편의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4**조 사고 조사처리는 과학적 치밀성, 법률법규 의존성, 실사구시, 실효성 치중 원칙에 따라 적시에 정확히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사고의 성질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응급조치 업무를 평가하고,** 사고 교훈을 총정리하며, 정리개혁 조치를 제출하고,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리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조사 보고는 법에 따라 적시에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사고 조사와 처리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사고발생 사업장은 반드시 적시에 전면적인 정리개혁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반드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고조사 처리를 책임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는 사고조사 보고서 회답 후 1년 안에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사고 개선과 예방 조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신속히 사회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사고 개선 조치를 실행하지 못한 관련 사업장과 인원에 대해서는 유관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85**조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조사결과 책임사고로 확정된 경우에는, 사고 사업장의 책임을 명확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추궁을 하는 외에, 안전생산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사 비준과 감독 직책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서의 책임도 명확히 조사하여 실책, 독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86**조 어떤 단체와 개인도 사고에 대하여 법에 따른 조사처리에 지장을 주거나 간섭할 수 없다.

제**87**조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응급** 관리부서는 정기적으로 해당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안전 사고상황을 정기적으로 통계분석하고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88**조 안전생산 관리감독관리 책임부서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직위해제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안전생산에 관계되는 사항을 비준하거나 검수를 통과시킨 경우

 2. 법에 따라 비준, 검수를 받지 못한 사업장이 임의로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접수한 후 단속 또는 법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에 따라 이미 비준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음에도 원래의 비준을 취소하지 않거나 안전생산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감독검사 중에 발견한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 직원이 앞의 항 규정 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9**조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가 심사․검수를 받는 사업주에게 지정된 안전설비, 기자재 또는 기타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안전생산 사항의 심사․검수 중에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받은 비용을 돌려주도록 명령한다. 내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90**조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작업을 책임지는 기관이 **자질을 빌려주거나, 예속하거나,** 허위 **보고서를** 발급하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것에 병행하여 위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병행하여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주와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앞의 항의 위법행위가 있는 기관 **및 직접 책임자**는 그에 상응한 자질**과 자격**을 말소하고, **5년 내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상황에 엄중할 경우에는 평생 업계와 직업 금지명령을 실행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1**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결정기구, 주요 책임자 또는 개인경영 투자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 생산경영 사업장에서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하여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앞의 항의 위법행위로 생산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한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를 직위해제 처분하고, 개인경영 투자자에 대하여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2**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이 법이 규정한 안전생산 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5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업장에 대하여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앞의 항의 위법행위로 생산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에 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앞의 항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또는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에는 형벌이 완료되거나 처벌을 받는 날로부터 5년 내에는 모든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 직위를 담당할 수 없다. 중대, 특별중대 생산안전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 그 업종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 직위를 담당할 수 없다.

제**93**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이 법의 안전생산 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생산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에는, **응급** 관리부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1. 일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년 수입 **40**%의 벌금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년 수입 **60**%의 벌금

 3.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년 수입 **80**%의 벌금

 4. 특별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년 수입 **100**%의 벌금

제**94**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기타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자가 이 법에서 규정한 안전생산 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산안전사고의 발생을 초래한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련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말소하고 또한 전년도 연수입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5**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구 설치 또는 안전생산 관리자 배치 **또는 안전기사 등록**을 아니한 경우

 2.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하역**하는 사업장 및 광산, 금속제련, 건축시공, **운수**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종사자, 파견노동자, 실습학생에게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4. 사실대로 안전생산 교육훈련 상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5.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의 조사,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종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안을 제정하지 않거나, 정기적 훈련을 조직하지 아니한 경우

 7. 특수작업 종사자가 규정에 따라 전문 안전작업훈련을 거쳐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종사한 경우

제**96**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정지 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하며, **또한 10만 위안 이상 5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에 따라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 또는 위험물품의 생산, 저장, 하역 등 건설항목에 안전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 또는 위험물품 생산, 저장, 하역 건설항목에 안전시설 설계가 없거나, 안전시설 설계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 또는 위험물품 생산, 저장, 하역 건설항목의 시공 사업자가 비준된 안전시설 설계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광산, 금속제련 건설항목 또는 위험물품 생산, 저장, **하역용** 건설항목을 준공하여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안전시설이 검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제**97**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이 엄중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요소가 비교적 큰 생산경영 장소와 관련 시설, 설비에 분명한 안전경고표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설비의 설치, 사용, 측정검사, 개조와 폐기가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 정비와 정기적 측정검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종사자에게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부합되는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위험물품의 용기, 운송도구 및 신체안전에 영향을 주고 위험성이 비교적 큰 해양석유 채굴 특수설비와 광산 갱내 특수설비가 전문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측정검사, 검수에 통과되지 아니하고, 안전사용증 또는 안전표시를 획득하지 아니한 채 사용에 투입한 경우

 6.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는 생산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공법,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98**조 법에 따라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송, 저장, 사용하거나 처리, 폐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 안전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9**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송, 저장, 사용하거나 처리, 폐기할 때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믿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위험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 등기하지 아니하거나, **정기 측정을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평가, 감시통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 예비안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폭파, 조립 및 국무원 **응급** 관리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에 전문 관리자가 현장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 위험 등급별 관리통제 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안전 위험 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통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조사, 처리 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00**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이 거절하고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돈하도록 명령을 내린 익일부터 기존 처벌액수를 기존으로 매일 단위로 연속하여 처벌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 생산경영 사업주가 생산경영 항목, 장소, 설비를 안전생산조건이 미비하거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병행하여 위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병행하여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산안전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도급사업자와 임차사업자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생산경영 사업주가 도급사업자와 임차사업자 간에 전문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계약, 임차계약에 각자의 안전생산 관리직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사업자와 임차사업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통일조정과 관리를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제**102**조 2개 이상의 생산경영 사업주가 동일 작업 구역 내에서 상대방의 안전생산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생산경영활동을 실시하고,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전문 안전생산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검사와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을 명령한다.

제**103**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가 근로자 기숙사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거나 근로자 기숙사와의 거리가 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생산경영 장소와 근로자 기숙사가 긴급 대피 수요, 분명한 표시 및 원활한 왕래 유지에 부합하는 출구와 **대피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생산경영 장소 또는 근로자 기숙사 출구, **대피통로를 점용,** 폐쇄, 봉쇄한 경우

제**104**조 생산경영 사업주가 종사자와 협의를 체결하여 안전생산사고에 따른 사상으로 인한 종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한 경우에 그 협의는 무효로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 개인경영 투자자에 대하여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종사자가 **직책에 따른 안전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관리에 따르지 아니하며, 안전생산 규칙제도 또는 조작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생산경영 사업주는 비판교육하고, 관련 규칙제도에 의하여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경영 사업주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거절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7**조 **고(高)위험 업종과 분야에 속하는 생산경영 사업장이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을 넘겨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안전생산 책임보험에 가입할 때까지 생산중지 및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제**108**조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조사처리기간에 임의로 직무를 이탈하거나, 도주하여 행방을 감추는 경우에는 강등, 직위해제 처분을 하며, 동시에 **응급** 관리부서는 1년 수입의 60%에서 100%까지의 벌금에 처한다. 도주하여 행방을 감추는 자는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책임자가 생산안전 사고를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지연 보고 하였을 경우에는 앞의 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09**조 관련 지방 인민정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가 생산안전사고를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지연 보고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0**조 **생산경영 사업장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 명령과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맡은 부서가 시정명령을 내린 익일부터 기존 처벌액수를 기존으로 매일 단위로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111**조 생산경영 사업장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맡은 부서가 지방 인민정부에** 폐쇄를 **제청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는 5년 이내에 모든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를 담임할 수 없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평생 해당 산업 생산경영 사업장의 주요 책임자를 담임할 수 없다.**

 **1.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고, 180일 이내에 3회 또는 1년 이내 4회 본 법이 정한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

 **2. 생산중지 및 휴업하여 정비하였으나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기준 또는 산업기준에서 정한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3.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기준 또는 산업기준에서 정한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않아 **중대, 특별중대 생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맡은 부서가 내린 생산중지 및 휴업하여 정비하는 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제**112**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해서 법에 따라 상응한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외에 **응급** 관리부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1. 일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3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 벌금

 3.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4. 특별중대사고 발생한 경우 **1,000**만 위안 이상 **2,000**만 위안 이하 벌금.

**생산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정황이 특별히 엄중해 사회적 영향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 응급 관리부서가 제1항에서 정한 벌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기준으로 책임이 있는 생산경영 사업장에 대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113**조 이 법이 규정한 행정처벌은 **응급** 관리부서와 기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 부서가 분장된 직책에 따라 결정한다. **그중, 본 법 제93조, 제108조, 제112조 규정에 근거하여 민항, 철로, 전력업종에 종사하는 생산경영 사업장 및 그 주요 책임자를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 주관 안전생산 관리감독 직책을 맡은 부서가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폐쇄의 행정처벌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정한다. 구류의 행정처벌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114**조 생산경영 사업장에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원의 사상, 타인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부담을 거절하거나 책임자가 도망쳐 행방을 감춘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한다.

 생산안전사고 책임자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조치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책임자에게 기타 재산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115**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품”이란 연소와 폭발이 용이한 물품, 위험화학품, 방사성물품 등 신체안전과 재산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중대한 위험(重大危险源)”이란 장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위험물품을 생산, 운반, 사용 또는 저장하는 동시에 위험물품의 수량 등이 임계수량의 단위(장소와 시설을 포함한다)와 같거나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16**조 이 법이 규정한 생산안전 일반사고, 비교적 큰 사고, 중대사고, 특별중대사고에 대한 구분 기준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

 국무원 **응급** 관리부서와 기타 안전생산 관리감독 책임부서는 각자 분장된 직책에 따라 관련 업계, 영역의 **중대한 위험의 식별기준과** 중대사고 발생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판정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17**조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